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78호 2020. 11. 24.(화)

##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483호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484호	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
남해군 조례 제2485호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남해군 조례 제2486호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남해군 조례 제2487호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남해군 조례 제2488호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
남해군 조례 제2489호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남해군 조례 제2490호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25

##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81호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0
남해군의회 규칙 제30호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	32

## 예 규

남해군 예규 제21호	남해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35
남해군 예규 제22호	남해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45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197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67
남해군 고시 제2020-199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70
남해군 고시 제2020-200호	도로명주소 고시	72
남해군 고시 제2020-201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74
남해군 고시 제2020-20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81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1344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82
남해군 공고 제2020-1354호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83
남해군 공고 제2020-1355호	경제립단지조성 부지매입 보상계획 열람공고	94
남해군 공고 제2020-1363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97
남해군 공고 제2020-1366호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16
남해군 공고 제2020-1387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121
남해군 공고 제2020-1388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122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483호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1월 24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가격”이란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제13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2. “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농산물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최저생산비”란 재료비 등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직접 들어간 비용(보조금으로 지원된 비용은 제외한다)으로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에서 조사한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비용을 말한다.
4.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정부가 승인한 남해군 산지유통계획 주관 및 참여조직과의 약정을 통해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산지폐기”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농산물 생산자가 자체적으로 폐기(廢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농협 및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② 기금은 100억 원 이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 적립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1.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기준가격과의 차액(이하 “차액”이라 한다) 지원
- 2. 산지폐기하는 농산물에 대한 최저생산비 지급
- 3.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사업 추진
- 4. 농산물 판매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 5. 그 밖에 군수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 1. 기금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
- 2. 분임기금운용관: 농축산과장
- 3. 기금출납원: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군 금고(「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 3. 그 밖에 군수가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대상) 기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마늘, 시금치 및 제14조에 따른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품목으로 한다.

제11조(지원기준 및 지원범위) 기금 지원의 세부기준과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액 지원은 제10조의 지원대상 중 상품(上品)을 기준으로 10일 이상 연속하여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차액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최저생산비 지원은 신청인 기준 3백만원을 그 지원의 최대로 한다.
3. 상품성이 없는 품목이 무분별하게 출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품목의 경우 지원 금액의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차액과 최저생산비의 연 지원 총액은 해당연도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지원신청) ① 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기금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농업인. 이 경우 하나의 세대에 농업인이 여러 명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명에게만 지원한다.
    - 가.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것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직접 생산하여 계통출하 했을 것
    - 다. 차액 지원은 1농가당 농산물 재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 라. 최저생산비 지원은 1품목당 재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계통출하조직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읍·면장은 그 신청요건 등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기준가격의 결정 등) ① 군수는 기준가격을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조사한 생산비, 유통비 등의 통계자료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제14조에 따른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결정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1. 최저생산비의 결정
- 2. 제10조에 따른 지원 대상 농산물의 결정
- 3. 기준가격의 결정
- 4. 기금운용 및 결산
- 5. 그 밖에 군수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유통지원과장, 농업기술과장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남해군의회 의원 1명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남해군지부장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다. 농업관련 및 품목별 단체 대표

라. 농산물 가격관련 전문가 등 군수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가 발생한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상반기 및 하반기 각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조사·연구)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산물 가격안정 등과 관련이 있는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농산물 가격안정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가 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84호

## 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1월 24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자치권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분권 촉진 지원) ① 군수는 지방분권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2. 군민참여 확대
3.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4. 민·관 협력체계 구축
5.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사업
6. 그 밖에 자치분권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

제6조(자치분권협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해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소속 인사
2.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3. 남해군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85호

##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1월 24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 을 “수탁기관”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체결 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를 “체결하여야”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86호

##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1월 24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한다.

제3조 중 “군수에게” 를 “군수에게 추천하되, 이장 1명 당 자녀 또는 손자, 손녀 1명을”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장학생 선발기준” 을 “별표의 평가기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읍·면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1. 중학생: 20만원 이내
2. 고등학생: 50만원 이내
3. 대학생: 100만원 이내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장학금의 수혜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연간 수업료” 를 “장학금”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별표]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총점 배분

계	이장 경력	학업성적 또는 특기	이장 상훈	기 장학금 수혜여부
100	30	30	20	20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이장 경력

근속연수	7년 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1년미만
점 수	30	25	20	15	10	5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업 성적 분야 (신청 직전 학기)	중·고 등학생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X 100%				
		90%이상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60%미만
	대학생	평균 학점(4.5만점 기준)				
		4.0이상	3.5이상 4.0미만	3.0이상 3.5미만	2.5이상 3.0미만	2.5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국가대표급, 각종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도 대표급, 도지사,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	군 대표급, 군수, 교육장표창 수상자	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	수상경력이 없으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점 수		30	25	20	15	10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교 학년의 성적으로 하고,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보통 이상 과목수/전체 과목수' 로 계산한다.

다. 이장 상훈: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하나만 인정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도지사	군수
점 수	20	15	10	5

라. 기 장학금 수혜여부

횟 수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점 수	20	15	10	5

남해군 조례 제2487호

##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1월 24일

남 해 군 수

##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4년제 이상 대학교” 를 “대학”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학교” 를 “대학”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학원생 및 2년제 이상 대학생” 을 “대학원생”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88호

##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1월 24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기부의 설치 및 종목)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국민체육활동의 저변확대와 군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 라 한다)를 설치하고, 경기부에는 복싱선수단(이하 “선수단” 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선수단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주무, 단원으로 구성하며, 각각의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 주무는 직장운동경기부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선수로 구분한다.

제4조(단원의 임용) ① 감독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용한다.

② 선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감독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한다.

③ 그 밖에 단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3.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6. 「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
7.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운동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 제7조(보수 등의 지급) ① 군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선수단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선수단의 체력관리와 경기력 향상, 편의도모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운영경비, 훈련, 대회참가, 합숙소 운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선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체육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남해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에 따라 임용된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

감독 및 선수 자격 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li> </ul>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대회 1위 입상자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선수 및 지도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li> </ul>
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 이내 전국대회 3위 이상을 1회 이상 입상한 사람</li> <li>○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li> </ul>

남해군 조례 제2489호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1월 24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再築)”을 “(再築)·개축”으로, “이하”를 “이하.”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중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 1억원”을 “대수선·리모델링: 1억8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보수”를 “중축·개보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제2호”로, “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축(再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제2호의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남해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마을부터 적용한다.

남해군 조례 제2490호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1월 24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해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 라 한다)로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대중교통운영자

제3조(재정지원)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영버스 운영으로 인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그 밖의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대중교통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제출한 재정지원 신청서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타당성
-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전문용역 기관의 경영수지 분석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하는 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등지원) ①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등 지원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 4. 군수가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재정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별지 서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사업체명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사업비	총사업비		원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원
자기자본액			원	자기자본 부담액		원
사업기간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남해군수 귀하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	--	-----	--	------	--

첨부 서류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서</li> <li>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li> <li>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li> <li>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	--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81호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0년 11월 24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교부하여 협약내용을 공증”을 “교부”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의회 규칙 제30호

##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0년 11월 10일

남해군의회회의장

남해군의회 규칙 제30호

##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의회포상규칙” 을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순화 양양” 을 “순화” 로 한다.

제6조 중 “군정” 을 “의정·군정” 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표창장) (생 략)</p> <p>1. (생 략)</p> <p>2. (생 략)</p> <p>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u>순화 양양</u>에        출선 수범한 경우.</p> <p>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u>군정</u>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        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p>	<p>제5조(표창장) (생 략)</p> <p>1. (생 략)</p> <p>2. (생 략)</p> <p>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u>순화</u>에 출선        수범한 경우.</p> <p>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u>의정 · 군정</u>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p>

예 규

남해군 예규 제21호

**남해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남해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발령한다.

2020년 11월 24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되어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남해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의결) ①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남해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지원범위, 방법 등 그 밖의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
-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 2. 남해군 고문변호사
-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 따라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같은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7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9조(구상권 청구의 검토) 군수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선임 지원		
징계의결요구개요	징계의결 요구			
	요구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요구사유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신청인 \_\_\_\_\_은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 따른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건번호	고소·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신청인 \_\_\_\_\_은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 따른 모든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예규 제22호

## 남해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남해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발령한다.

2020년 11월 24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남해군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군수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 상담 및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한다.

- 제6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군수는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및 군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8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지침은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 제9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1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접수한다.



제12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접수순서대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내어주어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 공개의 절차 등을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3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를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4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5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내용과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 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계속하여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7조(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때 공익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한데 묶어 관리한다.

④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사람이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하여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8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을 할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 공익신고센터에서 직접 접수한 경우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는 조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⑥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군수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받고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재교부를 요청하거나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20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9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8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20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은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직자는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 ② 공직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군수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군수는 소속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공익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 ③ 군수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4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군수는 공익신고등을 한 소속직원이 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소속직원에게 인사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신변보호 안내) 군수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의 감면) ① 군수는 공직자의 공익신고등을 통해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그 공직자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공직자가 이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7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군수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군수는 군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3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군수는 군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1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군수는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과건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32조(협조 등의 요청) 군수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	------	------	---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남해군수 귀하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접 수 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남해군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 수 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남해군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남해군수 귀하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20 년 월 일 접수
20 공익 제 호

담당자	담당	책임관

**공 익 신 고 기 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 당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조사종료일	20 년 월 일	내 용	
	이 송 일	20 년 월 일	이송기관	
	결과통보일	20 년 월 일	대상자 (대상기관)	

신분공개 동의여부	조사기관	수사기관	종결확인	담당자	담당	책임관
종 결 일	20 . . . . .					
보존기간	년 ( 20 . . . . . 까지 )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 요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 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사항 처리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피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 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 2.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	--	------	--	------	-----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 ] 내부 공익신고자		[ ] 외부 공익신고자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	--	--	--	--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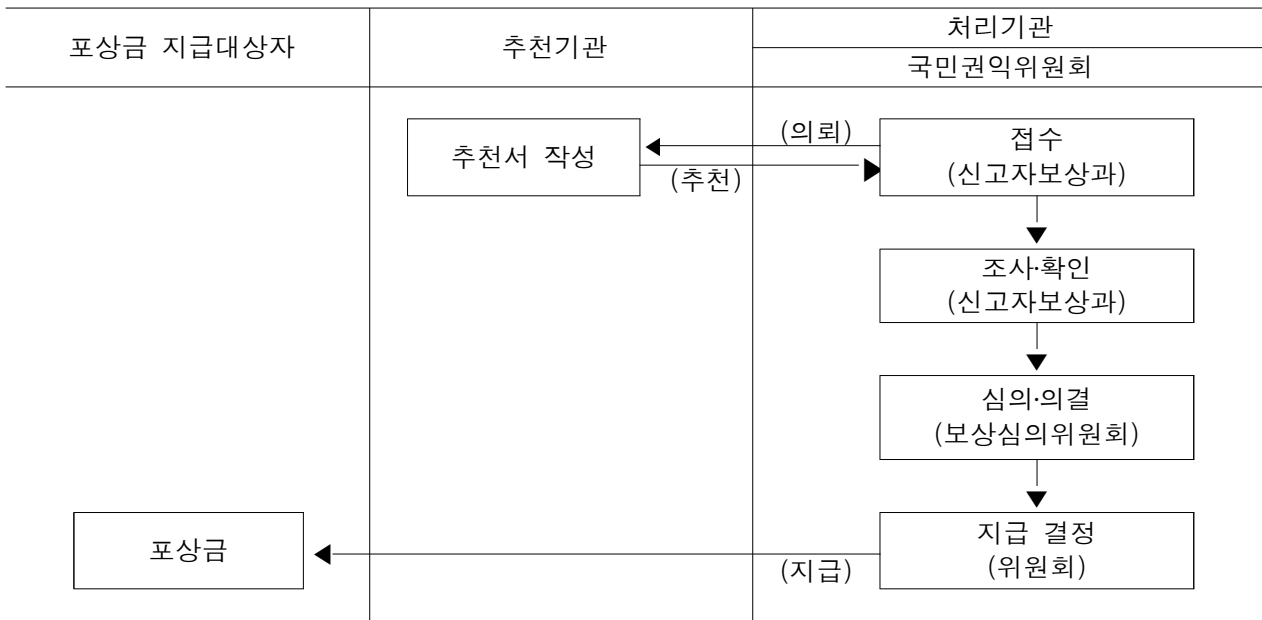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3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 ]에 ✓를 표시합니다.
-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 - 197호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남 해 군 수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583,445,497	579,622,638	3,822,859	
일 반 회 계	477,164,459	476,053,536	1,110,923	
특 별 회 계	106,281,038	103,569,102	2,711,936	
상수도특별회계	20,779,952	20,920,617	△140,665	
청사건립특별회계	55,371,115	55,023,415	347,7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75,240	796,432	△21,192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59,522	872,790	△13,26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42,831	642,831	-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27,852,378	25,313,017	2,539,361	

□ 세입예산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477,164,459	476,053,536	1,110,923	
지방세 수입	24,303,947	21,888,585	2,415,362	
지방세	24,303,947	21,888,585	2,415,362	
세 외 수 입	11,322,730	17,184,898	△5,862,168	
경상적세외수입	5,754,431	6,228,064	△473,633	
임시적세외수입	5,568,299	10,956,834	△5,388,535	
지방교부세	167,139,200	171,880,000	△4,740,800	
조정교부금등	25,322,116	24,014,281	1,307,835	
보조금	197,094,725	190,399,717	6,695,008	
국고보조금등	148,772,168	143,691,309	5,080,859	
도비보조금등	48,322,557	46,708,408	1,614,14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981,741	50,686,055	1,295,686	
보전수입등	37,450,795	37,450,795	-	
내부거래	14,530,946	13,235,260	1,295,686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106,281,038	103,569,102	2,711,936	
지방세				
세외수입	5,860,330	5,135,454	724,876	
경상적세외수입	5,494,889	4,882,000	612,889	
임시적세외수입	365,441	253,454	111,987	
지방교부세	200,000	-	200,000	
보조금	14,368,204	12,627,234	1,740,970	
국고보조금등	11,539,799	11,079,502	460,297	
도비보조금등	2,828,405	1,547,732	1,280,67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5,852,504	85,806,414	46,090	
보전수입등	54,389,243	54,392,243	△3,000	
내부거래	31,463,261	31,414,171	49,090	

□ 세출예산

○ 일반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477,164,459	476,053,536	1,110,923	
인 건 비	58,096,258	62,533,123	△4,436,865	
물 건 비	27,995,225	30,300,160	△2,304,935	
경 상 이 전	152,618,465	155,206,529	△2,588,064	
자 본 지 출	195,074,059	181,928,244	13,145,815	
용 자 및 출 자	34,104	27,600	6,504	
보 전 재 원				
내 부 거 래	31,735,261	31,686,171	49,090	
예 비 비 및 기 타	11,611,087	14,371,709	△2,760,622	

○ 특별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합 계	106,281,038	103,569,102	2,711,936	
인 건 비	3,330,555	3,732,875	△402,320	
물 건 비	5,502,310	5,565,082	△62,772	
경 상 이 전	4,505,063	4,629,715	△124,652	
자 본 지 출	40,750,183	37,789,665	2,960,518	
용 자 및 출 자				
보 전 재 원	1,130,567	818,091	312,476	
내 부 거 래	50,953,777	50,925,091	28,686	
예 비 비 및 기 타	108,583	108,583	-	

남해군 고시 제2020 - 199호

##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남 해 군 수

##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100	NI52-6-4-10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100	NI52-6-4-10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두미003	NI52-6-12-003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경상남도 남해군청 환경녹지과(☎055-860-3663)에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부 칙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남해군 고시 제2020 - 200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920-1 외 2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 별 도 열 람 )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1.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0 - 201호

##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139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붙임 참조

지역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기준점) 고시내역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표지재질	측량성과 모관장소	비고
			중선	횡선	중선	횡선							
도근점	10107	중부	147424.01	281216.93	247732.619	281291.631	27.924	127 53 18.8888	34 49 20.0080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0108	중부	147644.24	281416.75	247952.852	281491.447	27.926	127 53 26.7716	34 49 27.0964	2020.10.23.	맨홀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0109	중부	149125.04	284142.98	249433.702	284217.624	27.964	127 55 14.5723	34 50 14.3463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088	중부	148704.34	285044.88	249013.019	285119.530	27.97	127 55 49.9110	34 50 00.426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089	중부	148135.90	286328.39	248444.611	286403.049	27.994	127 56 40.2078	34 49 41.594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090	중부	147994.45	286163.27	248303.154	286237.933	27.992	127 56 33.6685	34 49 37.0562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091	중부	145271.27	287525.01	245580.024	287599.725	28.081	127 57 26.2193	34 48 08.2813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092	중부	145145.97	287584.01	245454.723	287658.725	28.033	127 57 28.4891	34 48 04.197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093	중부	142228.48	290088.85	242537.288	290163.608	28.109	127 59 05.8968	34 46 28.7514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094	중부	142195.51	290200.88	242504.329	290275.633	28.111	127 59 10.2891	34 46 27.6463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095	중부	142537.85	285928.28	242846.579	286003.050	28.02	127 56 22.4067	34 46 40.0800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096	중부	142528.67	285817.83	242837.395	285892.603	28.018	127 56 18.0001	34 46 39.815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40	중부	138465.06	286680.96	238773.822	286755.813	28.022	127 56 50.4666	34 44 27.7033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41	중부	138305.14	286641.00	238613.897	286715.850	28.02	127 56 48.8885	34 44 22.5264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42	중부	135776.50	288001.06	236085.296	288075.954	28.048	127 57 41.3785	34 43 00.0628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43	중부	135669.07	288081.49	235977.868	288156.391	28.05	127 57 44.4888	34 42 56.5522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44	중부	137716.38	289768.53	238025.205	289843.384	28.083	127 58 51.5729	34 44 02.452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45	중부	138081.95	289771.14	238890.770	289845.983	28.085	127 58 51.8153	34 44 14.3129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46	중부	136019.61	289824.31	236328.447	289899.197	28.08	127 58 53.1158	34 43 07.3809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47	중부	136224.74	289736.45	236533.569	289811.326	28.081	127 58 49.7414	34 43 14.0642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48	중부	137234.20	286025.34	234920.091	294866.385	28.001	127 56 24.2770	34 43 47.9653	2020.10.23.	맨홀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49	중부	137219.00	285810.66	235036.093	295037.566	27.997	127 56 15.8940	34 43 47.5371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50	중부	137201.38	285680.56	236047.351	295710.722	27.994	127 56 10.7145	34 43 47.0047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51	중부	137374.18	286034.55	235880.536	295688.153	28.002	127 56 24.6003	34 43 52.5047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52	중부	137379.56	285942.2	236886.057	292638.211	28	127 56 21.0628	34 43 52.7070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특지계		세계특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중선	횡선	중선	횡선							
도근점	12063	중부	137249.24	285934.89	236958.936	292772.165	28	127 56 20.7277	34 43 48.4808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65	중부	142048.84	296217.9	237494.408	294765.506	28.192	128 03 06.8263	34 46 20.910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66	중부	142475.87	296031.41	237305.53	294787.779	28.188	128 02 59.6885	34 46 34.8287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67	중부	147188.01	297181.32	242357.769	296292.631	28.192	128 03 46.8439	34 49 07.325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68	중부	147300.63	297028.91	242784.789	296106.129	28.19	128 03 40.8945	34 49 11.028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69	중부	148163.81	295917.8	247496.94	297255.948	28.164	128 02 57.5348	34 49 39.4140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70	중부	147932.24	295777.87	247609.549	297103.537	28.163	128 02 51.9348	34 49 31.9479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71	중부	141131.51	293016.23	248472.704	295592.406	28.163	128 01 00.5707	34 45 52.2147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72	중부	140702.57	292683.42	248241.128	295652.488	28.189	128 00 47.3157	34 45 38.4063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73	중부	148522.82	292411.56	241440.38	293090.993	28.103	128 00 39.7181	34 49 52.2283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74	중부	148466.59	292130.63	241011.437	292758.186	28.089	128 00 28.6416	34 49 50.495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75	중부	147212.82	289306.75	248831.645	292486.184	28.066	127 58 37.0463	34 49 10.7207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76	중부	147197.77	289146.1	248775.41	292205.254	28.062	127 58 30.7201	34 49 10.2831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13	중부	134611.16	294791.5	247521.593	289381.41	28.188	128 02 07.7335	34 42 20.069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14	중부	134727.16	294962.68	247506.544	289220.767	28.172	128 02 14.5000	34 42 23.7761	2020.10.23.	맨홀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15	중부	135738.4	295635.86	249351.189	290892.758	28.188	128 02 41.3664	34 42 56.3613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16	중부	135571.59	295613.29	249384.79	290610.928	28.188	128 02 40.4115	34 42 50.956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17	중부	136577.18	292563.35	250395.01	288889.263	28.127	128 00 40.9671	34 43 24.5900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18	중부	136650.05	292697.31	250487.947	288765.279	28.131	128 00 46.2600	34 43 26.9139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19	중부	137185.49	294690.67	252589.136	287888.14	28.173	128 02 04.8104	34 43 43.628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20	중부	136996.61	294712.94	252776.074	287921.156	28.172	128 02 06.6003	34 43 37.4937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21	중부	133502.25	296189.86	254016.516	288897.303	28.201	128 03 02.2190	34 41 43.6203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22	중부	133851.13	296051.92	253905.111	288781.23	28.188	128 02 58.9426	34 41 54.9864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23	중부	133758.48	296097.29	255746.793	290305.234	28.199	128 02 58.6874	34 41 51.9522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24	중부	133674.75	296124.95	256228.318	290557.23	28.2	128 02 59.7397	34 41 49.2391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25	중부	133834.21	296182.33	257337.553	291032.675	28.201	128 03 02.0589	34 41 54.3394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26	중부	133623.88	296660.89	257409.4	291024.228	28.212	128 03 20.7728	34 41 47.4070	2020.10.23.	맨홀	남해군청	신규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특저계		세계특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표지제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중선	횡선	중선	횡선							
도근점	14027	중부	133666.88	296671.39	258496.943	294358.843	28.212	128 03 21.2029	34 41 48.7965	2020.10.23.	맨홀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28	중부	133712.95	296645.8	258555.787	294264.759	28.212	128 03 20.2165	34 41 50.3021	2020.10.23.	맨홀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29	중부	133753.31	296641.8	254918.772	292856.137	28.212	128 03 20.0763	34 41 51.6128	2020.10.23.	맨홀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30	중부	133787.32	296638.52	254894.809	292777.813	28.212	128 03 19.9613	34 41 52.717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31	중부	133667.22	296749.26	253922.269	292597.889	28.214	128 03 24.2822	34 41 48.7630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32	중부	133803.42	296780.66	254197.467	292500.574	28.215	128 03 25.5519	34 41 53.191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33	중부	133880.05	296522.51	251290.154	293053.606	28.209	128 03 15.4421	34 41 55.765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34	중부	133967.46	296576.09	251097.704	292966.064	28.21	128 03 17.5828	34 41 58.583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35	중부	132748.43	295620.31	251068.636	291367.721	28.186	128 02 39.5379	34 41 19.3539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36	중부	132696.77	295688.73	251023.613	291263.472	28.188	128 02 42.2046	34 41 17.664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37	중부	132447.13	295772.3	249716.832	298459.093	28.19	128 02 45.3856	34 41 09.5288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38	중부	132370.15	295842.48	249962.077	298410.007	28.191	128 02 48.1109	34 41 07.0054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4039	중부	132507.04	295750.05	251255.601	296345.029	28.189	128 02 44.5361	34 41 11.4780	2020.10.23.	육상물구멍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01	중부	142329.78	282319.07	251502.6	296648.493	27.966	127 54 00.4040	34 46 34.3888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02	중부	142484.84	282476.15	254256.61	296953.293	27.962	127 54 06.6553	34 46 30.3844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03	중부	142050.41	280716.82	254218.571	296774.855	27.914	127 52 57.3009	34 46 25.794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04	중부	142145.96	280642.18	255444.477	295499.017	27.913	127 52 54.3886	34 46 28.9160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05	중부	142281.63	279676.89	255363.968	295408.431	27.886	127 52 16.4665	34 46 33.5909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06	중부	142470.99	279333.42	242638.433	282393.867	27.876	127 52 03.0440	34 46 39.8311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07	중부	138822.18	278161.19	242793.496	282550.937	27.833	127 51 15.7289	34 44 41.7623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08	중부	138417.77	278324.4	242359.037	280791.627	27.888	127 51 22.0095	34 44 28.595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09	중부	138858.12	280632.27	242454.584	280716.983	27.906	127 52 52.8775	34 44 42.2380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10	중부	139030.86	280453.52	242590.237	279751.696	27.901	127 52 45.9103	34 44 47.8837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11	중부	137327.55	278804.05	242779.581	279408.222	27.851	127 51 40.4673	34 43 53.0681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12	중부	137334.16	278805.71	239130.766	278236.069	27.851	127 51 40.5648	34 43 53.3020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13	중부	137362.54	278924.96	238726.367	278939.286	27.855	127 51 45.2612	34 43 54.1897	2020.10.23.	맨홀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14	중부	136927.46	281551.23	239166.759	280707.138	27.923	127 53 28.5237	34 43 39.3312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특지구		세계특지구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표지제일	측량성과 모관주소	비고
			중선	횡선	중선	횡선							
도근점	15015	중부	136961.06	281712.94	239339.496	280528.387	27.927	127 53 34.6967	34 43 40.3750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16	중부	138723.95	283267.65	237636.161	278878.957	27.954	127 54 36.4242	34 44 37.1242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17	중부	138935.19	283222.15	237642.767	278880.618	27.952	127 54 34.7104	34 44 43.9918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6023	중부	146700.71	279302.39	237671.147	278999.869	27.892	127 52 03.2380	34 48 57.0816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6024	중부	147153.5	279390.34	237236.123	281626.129	27.897	127 52 06.8719	34 49 11.7466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6025	중부	145972.36	277191.38	237269.728	281787.835	27.866	127 50 39.6636	34 48 34.0317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6026	중부	145761.62	277200.86	239032.637	283342.514	27.825	127 50 40.2669	34 48 27.1914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6027	중부	151931.01	274257.33	239243.882	283297.005	27.746	127 48 46.4323	34 51 48.1574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6028	중부	151820.02	274475.44	247009.283	279377.114	27.753	127 48 54.9830	34 51 44.4966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6029	중부	154352.07	275784.78	247462.074	279465.049	27.777	127 49 47.3494	34 53 06.3080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6030	중부	154464.72	275851.56	246280.895	277266.121	27.779	127 49 50.0156	34 53 09.9463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6031	중부	150005.32	277358.01	246070.16	277275.606	27.855	127 50 47.8555	34 50 44.8441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6032	중부	150012.25	277419.17	252239.454	274331.963	27.866	127 50 50.2647	34 50 45.0521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59	중부	155400.23	279642.97	252128.465	274550.074	27.877	127 52 19.8278	34 53 39.2563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60	중부	155230.92	279784.32	254660.529	275859.361	27.88	127 52 25.1394	34 53 33.7230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61	중부	157328.85	279865.3	254773.181	275926.138	27.89	127 52 29.0452	34 54 41.7703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62	중부	157230.37	279835.68	255708.764	279717.509	27.889	127 52 27.8446	34 54 38.5636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63	중부	157139.64	279766.68	255539.464	279858.867	27.887	127 52 25.0659	34 54 35.6650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64	중부	157610.13	277952.85	257637.378	279939.799	27.83	127 51 13.8105	34 54 51.491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65	중부	157663.71	277665.68	257538.905	279910.18	27.821	127 51 02.5168	34 54 53.2091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10	중부	160112.17	278979.94	257448.167	279841.185	27.868	127 51 55.1178	34 56 12.3284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11	중부	160344.62	279139.28	257918.624	278027.347	27.863	127 52 01.4753	34 56 19.8559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12	중부	161171.81	281444.01	257972.195	277740.177	27.922	127 53 32.5751	34 56 46.006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13	중부	161220.41	281558.86	260420.683	279054.383	27.955	127 53 37.1177	34 56 47.5524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14	중부	160692.98	282580.56	260653.135	279213.725	27.945	127 54 17.1907	34 56 30.1419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15	중부	160828.58	282703.77	261480.356	281518.43	27.947	127 54 22.0609	34 56 34.5652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16	중부	155733.72	283604.57	261528.965	281633.276	27.988	127 54 55.7549	34 53 48.9521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표지제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중선	횡선	중선	횡선							
도근점	18017	중부	155487.87	283799.09	261001.552	282654.999	27.988	127 55 03.3270	34 53 40.8877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18	중부	154291.96	283002.72	261137.147	282778.208	27.925	127 54 31.5401	34 53 02.3301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19	중부	154069.02	282811.94	256042.329	283679.083	27.922	127 54 23.9490	34 52 55.1526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60	중부	149042.39	290818.14	255796.487	283873.611	28.075	127 59 37.2211	34 50 09.6019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61	중부	149076	290536.31	254600.566	283077.283	28.07	127 59 26.1438	34 50 10.7826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62	중부	150086.26	288814.66	254377.627	282886.51	28.066	127 59 18.7788	34 50 44.1067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63	중부	150179.2	288690.68	250313.847	277432.691	28.064	127 58 13.9347	34 50 47.1611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64	중부	152280.42	287813.58	250320.775	277493.845	28.014	127 57 40.2064	34 51 55.6104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65	중부	152467.36	287846.6	237542.956	286100.221	28.015	127 57 41.5768	34 52 01.665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66	중부	153707.78	288822.77	237527.755	285885.537	28.037	127 58 20.4780	34 52 41.6070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67	중부	153596.38	288706.7	237510.136	285755.439	28.064	127 58 15.8655	34 52 38.0290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68	중부	155438.04	290230.75	237682.947	286109.429	28.071	127 59 16.5822	34 53 37.3000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69	중부	155919.57	290482.76	237688.319	286017.08	28.077	127 59 26.6801	34 53 52.8426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70	중부	157028.8	290958.23	237557.999	286009.772	28.09	127 59 45.8511	34 54 28.6791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71	중부	157100.65	290949.78	233811.204	296264.758	28.09	127 59 45.5466	34 54 31.0130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72	중부	158188.12	294284.44	234160.075	296126.807	28.173	128 01 57.3241	34 55 05.2022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73	중부	158246.97	294190.35	234067.434	296172.186	28.172	128 01 53.6420	34 55 07.1428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74	중부	154609.97	292781.64	233983.704	296199.848	28.122	128 00 56.7025	34 53 09.6067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75	중부	154586	292703.32	234143.158	296257.218	28.121	128 00 53.6090	34 53 08.8549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76	중부	153613.46	292523.38	233932.842	296735.785	28.114	128 00 46.1374	34 52 37.3666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77	중부	153888.66	292428.07	233975.839	296746.28	28.114	128 00 42.4154	34 52 46.3204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78	중부	150981.33	292979.04	234021.912	296720.688	28.111	128 01 03.0271	34 51 11.8088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79	중부	150788.88	292891.49	234062.266	296716.697	28.109	128 00 59.5047	34 51 05.594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80	중부	150759.84	291293.14	234096.271	296713.413	28.087	127 59 56.5849	34 51 05.1726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81	중부	150714.82	291188.89	233976.178	296824.152	28.066	127 59 52.4641	34 51 03.745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82	중부	149407.89	298384.52	234112.38	296855.553	28.217	128 04 35.1152	34 50 18.9917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83	중부	149653.14	298335.44	234189.005	296597.404	28.216	128 04 33.2872	34 50 26.9668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중선	횡선	중선	횡선							
도근점	19084	중부	150946.71	296270.48	234276.419	296650.979	28.172	128 03 12.5596	34 51 09.5656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85	중부	151193.7	296573.95	233057.379	295695.216	28.18	128 03 24.6059	34 51 17.4659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86	중부	153947.71	296878.81	233005.713	295763.641	28.194	128 03 37.7498	34 52 46.7451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87	중부	153909.68	296700.16	232756.079	295647.217	28.189	128 03 30.7007	34 52 45.5223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88	중부	155135.62	295424.55	232679.1	295917.4	28.166	128 02 40.9607	34 53 25.7812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89	중부	155055.11	295333.96	232815.987	295824.968	28.164	128 02 37.3607	34 53 23.1998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남해군 고시 제2020 - 204호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남해군 고시 제2016-89호(2016.11.15.)로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 남 해 군 수

-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 위 치 :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07번지 일원
  - 면 적 : 50,900m<sup>2</sup>
-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사유 : 당초 독일문화 체험공원 조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지역을 지정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기간이 만료하여 해제 고시하고자 함
- 3.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일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일로부터
- 4. 기타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3)에 비치하고 열람합니다.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 - 1344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남해군수	주소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소하천명	청산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587번지		
	면적	88㎡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11. 9.~ 영구		
	목적 및 사유	농어촌도로(창선면204호선) 개설공사로 인한 교량 설치		

남해군 공고 제2020 - 1354호

##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2.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의류수거함의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4조)

나.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관리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관리자의 해지 및 관리자 준수사항(안 제7조~제10조)

라. 관리자의 책임 및 도로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수(안전건설국 환경녹지과)

-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우52425)
- 전 화 : 055-860-3262, 팩스 : 055-860-3707
- e-mail : joryu@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전화 055-860-32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의류수거함의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 관내에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제3조(의류의 범위) 이 조례에서 “의류”란 면 의류, 동·식물성 섬유 의류, 합성섬유류 의류, 그 밖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의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 2. 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 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수거함의 규격·설치기준 등을 마련해서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관리자 지정 등) ① 군수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의류수거함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그 관리 능력이 있는 자
2. 그 밖에 관리능력이 인정되어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관리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지정서를 내어 주어야 한다.

④ 수거함 관리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 해지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에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3회 이상의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 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관리자 지도) 군수는 수거함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 관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군수가 정한 수거함 설치·관리기준 및 관리계획 준수
5. 그 밖에 수거함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관리자 준수사항) ① 관리자는 주 1회 이상 의류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 적정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수거함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 1. 2차로 이상 및 6m 이상 도로변
- 2. 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m 이내
- 3. 학교주변 보도 및 공원 내, 도로변 사유지
- 4. 그 밖에 군수가 설치를 금지한 장소
- ④ 관리자는 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을 군의 실정에 맞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⑤ 관리자는 별표 1에 따른 안내문을 수거함에 부착해야 한다.
- ⑥ 관리자는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자 책임) 관리자는 수거함 관리 및 의류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2조(도로점용허가 등) ① 관리자는 수거함 설치 위치가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거함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관리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거함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이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 보되, 시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제6조에 따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1]

수거함에 부착할 안내문(제10조제5항 관련)

1. 관리번호 부착

관리번호 :        -        호
관리자(상호) :
연락처 :

2. 배출가능 종류 안내문

- 배출 가능한 제품: 면 의류, 동·식물성 섬유 의류, 합성섬유류 의류, 그 밖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
- ※ 이외의 품목은 제외(솜이불, 베개, 신발, 롤러스케이트, 바퀴가방 등)

※ 관리번호, 안내문 크기 및 부착위치는 의류수거함 규격 등을 고려 작성 및 부착

[별지 제1호서식]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신청서(제6조 관련)

(앞 면)

신청인	주 소		
	단체명(성명)		전화번호
설 치·운 영 기 간			
설 치 위 치			
설 치 면 적(m <sup>2</sup> )			
설 치 규 격 (가로×세로×높이)			
수 거 품 목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남 해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지정서

관리번호				
신청인	주 소			
	단체명(성명)		전화번호	
지 정 기 간				
설 치 위 치				
설 치 면 적(m <sup>2</sup> )				
설 치 규 격 (가로×세로×높이)				
수 거 품 목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류수거함 관리자(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남해군 공고 제2020 - 1355호

### 경제림단지조성 부지매입 보상계획 열람공고

『경제림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2020년 11월 11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개요

- 가. 사 업 명 : 경제림단지 조성
- 나. 위      치
  - 망운산 경제림 단지 : 남해군 서면 노구리 산98번지 일원
- 다. 사 업 량 : 2,326,051㎡(7필지)
- 라.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 2. 보상계획

- 가. 보상시기 : 2021년 1월 ~ 2021년 6월중(※보상일정은 기관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나. 보상방법 : 개인별 현금 보상(계좌이체)
-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알림→감정평가의뢰 및 실시→보상액 산정→보상협의요청→협의→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공탁 →이의재결 또는 소송
- 라. 기타사항 :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별 통지 예정

3. 감정평가 선정 및 시행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선정방법 : 3인을 선정하되,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추천하지 않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않은 경우 2인 선정

다. 추천방법 :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라. 추천기한 :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6.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경우(미등기 필지 거소불명 등)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보상계획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에 따른 분할측량 등의 사유로 편입면적 변경 및 보상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산림조성팀(☎055-860-36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1부. 끝.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 조서

○ 공사명 : 경제림단지 조성 부지매입 사업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예정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합계				2,326,051	2,326,051	-	-	-	-	-	-
1	서면 노구리	산98	임	514,887	514,887	노○마을회	남해군 서면				
2	서면 노구리	산99-1	임	932,926	932,926	삼○호외 4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111				
3	서면 노구리	산99-2	임	233,186	233,186	유○마을회	남해군 서면				
4	서면 노구리	산98-1	임	402,501	402,501	유○마을회	남해군 서면				
5	서면 노구리	산128	임	36,198	36,198	유○마을회	남해군 서면				
6	서면 남상리	산60-4	임	93,025	93,025	남○부락	남해군 서면				
7	서면 남상리	산60-3	임	113,328	113,328	중○마을회	남해군 서면				

남해군 공고 제2020 - 1363호

##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 없는 사용허가 규정을 상위 법률에 합치되도록 장사시설 사용을 신고제로 개정하고, 장사시설 사용기간을 법에 맞추어 30년으로 바꾸고, 사용료와 관리비를 개정하여 조례를 재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사용신고로 개정(제3조).

- 1)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 → 장사시설 사용 신고로 개정
-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신고사항으로 개정

나.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개정(제4조, 별표 3)

- 1) 장사시설 사용기간 60년을 법에 맞추어 30년으로 개장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 별표 3
- 2)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비 개정 : 별표 3

다. 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규정 재정비(제5조)

- 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범위 : 별표 4로 명확히 규정
- 2)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및 불법체류 외국인을 감면대상자로 추가하여 재정비

라. 장사시설 지도감독 및 위탁 취소 규정 신설(제17조, 제18조)

- 1) 장사시설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
- 2) 장사시설 관리 운영 위탁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위탁의 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12월 2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852,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장사행정팀(전화 055-860-3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한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등) ① 군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2. 창선공익장례식장: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487번길 15

② 장사시설의 세부 명칭과 사용 토지는 별표 1과 같고, 사용기준과 사용대상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사용신고)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를 작성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및 관리비 이외의 석물 등 연고자가 부담하는 부대비용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서 별표 4에 따른 사람
3.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4.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는 무의탁사망자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장사시설이 있는 서면 연족리에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이 사망하여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연고자나 사전사용 신고한 사람이 사용기간 중에 사용을 포기하거나 사전사용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기간 1년 이내 : 100분의 50 반환
2. 사용기간 1년 초과 2년 이내 : 100분의 40 반환
3. 사용기간 2년 초과 3년 이내 : 100분의 30 반환
4. 사용기간 3년 초과 4년 이내 : 100분의 20 반환
5. 사용기간 4년 초과 5년 이내 : 100분의 10 반환
6. 사용기간 5년 초과 : 반환하지 않음

② 제1항의 사유로 관리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할 계산하여 남은 관리비를 반환한다.

제7조(사용기간) ①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사용일부터 30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지난 장사시설의 연고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년 이내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신고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1. 사용 신고한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
-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장사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 1.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 연고자의 요구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거나 유골 등을 반환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9조(사용신고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

- 1. 군 관할 구역 밖에서 각종 개발행위 등의 사유로 발굴된 무연분묘의 개장유골인 경우
- 2. 군 관할 구역 밖의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한 적출물 등의 경우
-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변경신고)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연고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
- 2. 사망,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하거나, 연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유골 반환 신청 등) 연고자가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거 및 개장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취소하였거나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취소 또는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연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유골의 수거 또는 개장을 하지 않아 무연분묘로 간주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면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당에 안치한 후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매장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고자가 부담한다.

제13조(시설설치 등) ① 분묘 등의 점유면적 및 시설설치 기준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며, 세부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자연장지의 사용방법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며,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봉안평장으로 안치하는 유골함은 목재 등 부식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봉안당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유골함에 넣어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안치할 수 있으며 유골함은 도자기의 특성과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⑤ 장사시설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은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망자 발생 시에 시설을 변경하여 함께 안치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등) 장사시설의 연고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훼손하였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군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장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3.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연고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는 제외한다)와 장사시설 중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장사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 및 사용 토지 (제2조제2항 관련)

1.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

구 분	명 칭	사용 토지
공익장례식장	남해추모누리장례식장	남해군 서면 연죽리 961-1번지 일원
매장·봉안평장 묘역	유자·치자·비자·동백·개나리	남해군 서면 연죽리 산 8, 산 13-1, 893, 961-1, 963번지 일원
봉안시설(봉안당)	안 락 원	
화장시설 및 장례식장	영 화 원	
산골시설	유택동산	
자연장지	추모정원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산 137번지 일원

비고

1. “매장묘역” 이란 분묘의 형태로 시신 및 유골을 매장하기 위하여 조성된 묘지를 말한다.
2. “봉안평장 묘역” 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장소에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묻어 봉분 없이 평탄하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산골시설” 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군수가 지정하는 특정한 장소에 뿌려서 장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창선공익장례식장

구 분	명 칭	사용 토지
공익장례식장	창선장례식장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464번지 일원

[별표 2]

장사시설의 사용구분(제2조 관련)

1.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

장사시설명	기 준	면적 및 안치기수 등	사용자
매 장 묘 역	분묘 1기당	10㎡ (합장 15㎡)	군민
봉안평장 묘역	1구당	1.35㎡	군민
봉안당(안락원)	유골1구당	1개 안치단	군민 또는 타지역민
봉안담	가족형 1개소	12기 안치	군민
	문중형(소)1개소	24기 안치	군민
	문중형(대)1개소	48기 안치	군민
봉 안 묘	1개소당	30㎡	군민
자 연 장 지	1구당	0.25㎡	군민 또는 타지역민
산 골 시 설	유골 산골		군민 또는 타지역민

비고

1. “군민”이란 사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사시설의 사용은 신청순서에 따라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정한다.

[별표 3]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4조제1항 관련)

1. 매장묘지 및 봉안시설 등

시설구분	사용료(30년)	관리비(1년)	사용(연장)기간	비고
매장묘지	860,000	20,000	30년(1회)	군민만 사용
봉안평장	130,000	5,000	30년(1회)	군민만 사용
봉안당	160,000	10,000	30년(1회)	타지역민 3배
봉안묘	3,120,000	60,000	30년(1회)	군민만 사용
봉안담 (가족형 12기)	3,950,000	12,000	30년(1회)	군민만 사용
봉안담 (문중형 24기)	7,900,000	20,000	30년(1회)	군민만 사용
봉안담 (문중형 48기)	15,800,000	30,000	30년(1회)	군민만 사용
자연장 1구	300,000	2,000	30년(1회)	타지역민 3배
자연장 2구	550,000	3,000	30년(1회)	타지역민 3배
자연장 4구	1,100,000	5,000	30년(1회)	타지역민 3배
자연장 6구	1,650,000	7,000	30년(1회)	타지역민 3배
문중·종중 (48기 이하)	기당/275,000	15,000	30년(1회)	타지역민 3배

비고

1. 묘지 또는 봉안된 유골의 현존지가 군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와 주소지 또는 등 록기준지가 타 시군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봉안당과 자연장에만 안치할 수 있 으며 사용료와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사용료와 관리비는 30년 단위로 징수하되,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위해 임시로 봉 안당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3. 석물 등 시설물의 설치에 장사시설의 연고자가 부담한다.

2. 화장장 및 장례식장

구분	내용	사용료(원)		비고
		군민	타지역민	
화장장	대인 (만15세 이상)	60,000	500,000	
	소인 (만15세 미만)	40,000	300,000	
	사산아	30,000	200,000	
	개장유골	40,000	200,000	
	기타 적출물(kg당)	4,000	4,000	
장례식장	영결식장	무료	100,000	
	빈소 및 접객실 (시간당)	특실 : 15,000원 이하 일반실 : 10,000원 이하		
	안치실 (시간당)	6,000원 이하		
	염습실 (회당)	50,000원 이하		

비고

1. 빈소 및 접객실, 안치실의 사용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한다.

[별표 4]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5조제1항 2호 관련)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별표 5]

분묘 등의 시설물 설치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분묘의 규격 및 형태

묘역별	규격(cm)	비고
석물 설치 묘역	가로110 × 세로220 × 높이 50(둘레석)	잔디 높이 30cm (둘레석 윗봉분)
석물 없는 묘역	가로110 × 세로220 × 높이(지면에서)20	
봉안평장묘역	가로 90 × 세로150	
봉안묘역	가로470 × 세로630	

2. 묘비 등의 규격

구분		규격(cm)
비석	입비	가로25 × 세로(높이)75 × 두께12
	와비	가로50 × 세로35 × 높이(지상:전면5 × 후면10, 지하:5)
	입비의좌대	가로40 × 세로25 × 높이20
	봉안평장와비	가로40 × 세로30 × 전면높이7, 후면높이15
둘레석	전·후면(상·하단)	가로110 × 세로21 × 두께9
	양 측면(상·하단)	가로178 × 세로21 × 두께9
	중단(전·후면)	가로76 × 세로32 × 두께5
	중단(양 측면)	가로175 × 세로32 × 두께5
	사각기둥	가로21 × 세로15 × 높이32
상석	상석	가로60 × 세로45 × 두께15
	좌대	가로60 × 세로45 × 두께6
	밑복석	가로15 × 세로15 × 지름15
	뒷대석	가로60 × 세로15 × 높이12

[별표 6]

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제13조제2항 관련)

1. 자연장지의 시설기준

- 가. 고인표시는 가로20cm×세로10cm×높이20cm 이내의 검정색 재질의 석물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유골함의 용적은 가로 20cm x 세로 20cm x 높이 20cm 이내이어야 한다.
- 다. 가목에 따라 고인의 표시를 할 경우 석물이 지면으로 부터 3cm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연장지 내에서의 행위 제한

- 가.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
- 나. 제단, 비석 등 추모시설의 설치
- 다. 취사, 소풍, 야영, 행사, 촛불을 피우는 행위 등
- 라. 자연장지를 고의적으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 마.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 바.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을 판매, 제공하는 행위
- 사. 그 밖에 자연장지 운영·관리에 방해가 되는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사망자 (사전사용자)	성명 (사전사용)	성별	생년월일 (사전사용)
	주소 (등록기준지)		사망장소
	사망년월일		사망원인
신고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 (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시설	장사시설 구분		사용기간 및 안치번호
	매장묘역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장지	
	봉안평장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장지	
	봉안당 (안락원)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장지	
	봉안담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장지	
	봉안묘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장지	
	자연장지 (추모정원)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장지			
화장시설		년 월 일 시 분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사망자 (사전사용자)	성명 (사전사용)	성별	생년월일 (사전사용)
	주소 (등록기준지)	사망장소	
	사망년월일	사망원인	

신고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 (기간연장) 시설	장사시설 구분		사용기간 및 장지						
	매장묘역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장지									
봉안평장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장지								
봉안당 (안락원)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장지								
봉안담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장지								
봉안묘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장지								
자연장지 (추모정원)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장지								
화장시설			년	월	일	시	분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 남해추모누리 연고자 변경 신고서

사용시설	명칭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		
	구분 <input type="checkbox"/> 매장묘역 <input type="checkbox"/> 봉안평장 <input type="checkbox"/> 봉안당 <input type="checkbox"/> 봉안담 <input type="checkbox"/> 봉안묘 <input type="checkbox"/> 자연장지		
	소재지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일원		
	번호	연고자 성명	
당초 연고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변경 연고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사항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유골 반환 신청 및 인수증

사용시설	명칭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		
	구분	<input type="checkbox"/> 매장묘역 <input type="checkbox"/> 봉안평장 <input type="checkbox"/> 봉안당 <input type="checkbox"/> 봉안담 <input type="checkbox"/> 봉안묘 <input type="checkbox"/> 자연장지		
	소재지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일원		
	번호	규모	기	

사망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연고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사항	사용허가년월일
	관리비납부조건
	유골반환사유
	연고자와의 관계
	관계공무원 확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의 반환을 신청하고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청 및 인수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20 - 1366호

##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정의(안 제2조)
  - 나.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관리를 위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다.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근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견제출
  - 가.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수(안전건설국 환경녹지과)

○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우52425)

○ 전 화 : 055-860-3262, 팩 스 : 055-860-3707

○ e-mail : joryu@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전화 055-860-32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남해군민의 건강증진에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사용 시 의사·약사의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등을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재 약국 또는 군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군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사용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등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등의 사용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을 분기별로 수거·운반·처리 한다. 다만, 시기와 횟수는 발생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1387호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최순0	주소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1230번길
소하천명		대벽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1087번지(1015번지 인근)		
	면적	1 m <sup>2</sup>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sup>2</sup>
	기간	2020. 11. 20. ~ 2025. 11. 19.		
	목적 및 사유	우수관 및 오수관로 매설		

남해군 공고 제2020 - 1388호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강인0	주소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7번길
	소하천명	고순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창선면 울도리 745-1, 919, 922번지		
	면적	4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6. 24. ~ 2021. 6. 23.		
	목적 및 사유	(변경)진입교량, 상수도관매달기, 우수관로매설, 토지의 점용		